

Muan Web Contents

2021년 06월 20일 05시 38분



목차

목차	2
장애인복지시책	3
7-1.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7-2.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7-3.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7-5. 소득세 공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7-6. 장애인 의료비 공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7-7. 상속세 상속 공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7-8.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4
7-9.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	4
지원대상	4
지원내용	5
7-10.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	5
지원대상	5
지원내용	5
7-11.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	6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7-12.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	6
지원대상	6
지원내용	6

장애인등록절차	장애인등록현황	장애인복지시책	장애인종합복지관
-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

연금수당	보육 교육	의료 및 재활지원	서비스
일자리 융자지원	공공요금 관련	세제혜택	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기타

7-1.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
지원대상
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직계비속의 배우자 · 형제 ·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
-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

지원내용

-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(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한도)
-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
-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

7-2.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

지원대상
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차량이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장애인의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일 때 가능(가족 :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형제, 자매)
- 차량은 2천cc미만의 승용차, 7-10인승 승용차, 12명 이상의 승합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, 오토바이만 가능)

지원내용

-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· 자동차세 면제
- 시 · 군 · 구청 세무과에 신청

7-3.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

지원대상

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, 직계존 · 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)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

지원내용

- LPG 연료사용 허용
-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
-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

7-5. 소득세 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
- 부양가족(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)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126

7-6. 장애인 의료비 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전체의 15% 공제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

7-7. 상속세 상속 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 :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·비속, 형제, 자매

지원내용

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

7-8.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체의 15% 공제
-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

7-9.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

지원대상

- 등록장애인 : 친족으로부터 재산(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)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
-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
-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

(<http://www.muam.go.kr>)

-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

지원내용

-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
 -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
 - 신탁을 해지하거나,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
 -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
 -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관할 세무서에 신청

7-10.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장애인용 보조기기,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.

번호	품목
1	의수족
2	휠체어
3	지체장애인용 지팡이
4	목발
5	성인용 보행기
6	욕창예방 물품(매트리스 · 쿠션 및 침대에 한함)
7	보조기(팔 · 다리 ·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)
8	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
9	장애인용 기저귀
10	보청기
11	인공후두
12	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
13	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
14	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
15	시각장애인용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

(<http://www.muam.go.kr>)

번호	품목
16	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
17	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
18	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
19	시각장애인용 음성독서기
20	점자판과 점필
21	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 단말기
22	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
23	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(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)

7-11.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
-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·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
-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
7-12.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

지원대상

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- 특허 출원 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~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
- 특허·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
- 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

MUAN

Web Contents

 무안군